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가단51172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28.
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6. 8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은 2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갑 제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6. 8. 30. 체결한 2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, 이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인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회기

별지